

예 산 총 칙

제1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1,144,330,462	34,329,909
일 반 회 계	1,043,208,488	31,296,254
특 별 회 계	101,121,974	3,033,655
기 타 특 별 회 계	17,397,023	521,908
• 주택사업특별회계	78,993	2,369
• 교통사업특별회계	10,730,729	321,921
•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6,535,829	196,074
• 자원순환특별회계	32,772	983
•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	18,700	561
공 기 업 특 별 회 계	83,724,951	2,511,747
• 상수도사업특별회계	23,321,154	699,634
• 하수도사업특별회계	57,400,968	1,722,029
•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3,002,829	90,084

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393,442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5,400,000천원으로 한다.